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7.

발 의 자 : 황정아 · 권향엽 · 박지원
김남근 · 김 윤 · 윤건영
장철민 · 양부남 · 이광희
허성무 · 박희승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형모듈원자로는 개발속도가 빠르고 노형이 다양하여 기존의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안전규제 현안이 발생할 수 있어,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새로운 노형의 설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개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00조의2).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0조의2(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) ①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알려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계획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알려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결과를 제10조제1항·제12조제1항·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·범위 및 절차·방법,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111조제1항제14호의2 중 “여부”를 “여부 및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

원자로 등의 설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0조의2(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) ①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.</u> <u>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알려야 한다.</u> <u>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계획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알려야 한다.</u> <u>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결과를 제10조제1항·제12조제1항·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.</u>

제111조(업무의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, 통제기술원, 안전재단,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14. (생략) 14의2.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<u>여부</u>에 대한 사전검토 15. · 16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 · 범위 및 절차 · 방법,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제111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4의2. ----- ----- ----- <u>여부</u> 및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로 등의 설계 ----- ----- 15. · 1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